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6.06.7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안산 화정영어마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, 수강료에 대한 징수 규정,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조례안에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존속 기간 연장 및 구성원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여 화정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를 단원구 꽃우물길 97(화정동)로 개정(안 제2조)
- 나. 위탁운영 자격 대상을 개정하여 운영자 모집범위를 확대함(안 제5조)
- 다.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- 라. 이용자의 수강료 면제 대상 신설(제7조의 3)
- 마.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(원)장으로 조정하고,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함(안 제10조, 제10조의2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6. 5. 1. ~ 2016. 5. 20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불임 1 >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 화정영어마을(이하 “영어마을”이라 한다)”을 “안산시 화정영어마을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안산시 화정영어마을(이하 “영어마을”이라 한다)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97(화정동)에 둔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”을 “영어전문기관, 대학 또는 청소년 육성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실적 평가 등을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수강료 등) ① 영어마을 학습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수강료 등의 면제)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
5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부시장” 을 “영어마을 업무담당국(원)장” 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마을 업무담당국(원)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안산교육지원청 담당국장, 안산시의회 의원, 영어교육 전문가, 학부모, 영어마을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

제10조의2 중 “2015년” 을 “2020년” 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평생학습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성명	평생학습과 정 천 수
	담당·팀장 직위성명	평생학습지원계장 김 영 진
	담당자 성명전화	전 미 영 (행정 2769)

〈별표 1〉

수 강 료(제7조의2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, 명 기준)

구 분	정규반(2일)	정규반(1일)	토요과정	방학과정(5일)
수 강 료	20,000원	10,000원	20,000원	100,000원

※ 위 표 이외의 별도 학습프로그램 수강료도 일 2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〈별표 2〉

수강료 반환기준(제7조의2 제2항 관련)

구 분	발생일	반환 기준
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	강의를 할 수 없거나,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수강료 전액 (단, 천재지변일 경우 일할계산)
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	개강 전	수강료 전액
	강의기간 1/3 경과 전	수강료의 2/3
	강의기간 1/2 경과 전	수강료의 1/2
	강의기간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개강 전	수강료 전액
나.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개강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금액 (가목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)과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안산시 화정영어마을</u> (이하 “영어마을”이라 한다)을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을</u> ----- -----.
제2조(위치) <u>영어마을은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에 둔다.</u>	제2조(위치) <u>안산시 화정영어마을(이하 “영어마을”이라 한다)은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97(화정동)에 둔다.</u>
제5조(위탁운영) ① -----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-----.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, 안산시화정영어마을운영위원회의 실적평가등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.	제5조(위탁운영) ① ----- 영어전문기관, 대학 또는 청소년육성을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실적평가 등을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.
〈신설〉	제7조의2(수강료 등) ① 영어마을 학습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.

현 행	개 정 안
	<p>제7조의3(수강료 등의 면제)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5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제10조(설치 및 구성) ①(생략)	제10조(설치 및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<p>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영어마을 업무담당원장---, ---안산시교육청---, ---영어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</p>	<p>③ ----- 영어마을 업무담당국(원)장---, ---안산교육지원청---, ---영어교육관련 전문가, 학부모, 영어마을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</p>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-----.	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어마을 업무담당 국(원)장이 되고 -----.
제10조의2(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)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-----.	제10조의2(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2020년 -----.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
신설	〈별표 1〉									
수 강 료										
(단위 : 원, 명 기준)										
	구 분	정규반(2일)	정규반(1일)	토요과정	방학과정(5일)					
	수강료	20,000원	10,000원	20,000원	100,000원					

※ 위 표 이외의 별도 학습프로그램 수강료도 일 20,000원을
초과할 수 없다

신설 〈별표 2〉

수강료 반환기준

구 분	발생일	반환 기준
영어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	강의를 할 수 없거나,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수강료 전액 (단, 천재지변일 경우 일할계산)
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	개강 전	수강료 전액
	강의기간 1/3 경과 전	수강료의 2/3
	강의기간 1/2 경과 전	수강료의 1/2
	강의기간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나.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개강 전	수강료 전액
	개강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금액(가목의 반환기준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) 과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4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. 7. 6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화정영어마을에서 운영 중인 학습프로그램의 신규개설 및 폐지 등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강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-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수강료를 납부토록 함.(안 제7조의2제1항)
- 프로그램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7조의2제2항)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의2(수강료 등) ① 영어마을 학습프로그램에 참가 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
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별표 2를 별표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		
<신설>	<p>제7조의2(수강료 등) ① 영 <u>어마을 학습프로그램 참여</u> <u>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</u> <u>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 <u>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</u> <u>다.</u></p>	<p>제7조의2(수강료 등) ① 영 <u>어마을 학습프로그램에 참</u> <u>가 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</u> <u>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의 <u>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.</u></p>										
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별표 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수 강 료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단위 : 원, 명 기준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width: fit-content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규 반(2 학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규 반(1 일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요 파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학과 정(5일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장 료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 00 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 00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 00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 0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위 표 이외의 별도 학습프로그램 수강료 도 일 2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</p>	구 분	정규 반(2 학)	정규 반(1 일)	토요 파전	방학과 정(5일)	소 장 료	20,0 00 원	10,0 00원	20,0 00원	100,00 0원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제></p>
구 분	정규 반(2 학)	정규 반(1 일)	토요 파전	방학과 정(5일)								
소 장 료	20,0 00 원	10,0 00원	20,0 00원	100,00 0원								
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별표 2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강료 반환기준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별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강료 반환기준 (원안과 같음)</p>										